

의안번호	제 62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월 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23
----------	-----

제출연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시설위치 : 수탁기관 내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 수탁기관 :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21년도 330,000천원(국비 150,000천원, 도비 180,000천원)
※ 매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역에 따라 사업비 편성(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조례에 근거한 주요업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
-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 충청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3. 참고사항

가. 타 시도 지원단 설치·운영현황

<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현황 >

【설치 1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예정 2】 '21년도 충북, 경북

('20.12월 현재)

구분	서울 (재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설치일	'12. 7.	'15.12.	'20. 7. (*20.신규)	'13. 8.	'20. 5. (*20.신규)	'20. 5. (*20.신규)	'20.10. (*20.신규)	'17. 3.	'19. 5.	'19.10.	'19. 6.	'17. 4.
위탁판	서울공공 보건재단	부 산 의료원	경북대학교 병 원	인천광역시 의 료 원	전남대학교 병 원	충남대학교 병 원	울산대학교 병 원	분당서울대 병 원	강원대학교 병 원	직 영	경상대학교 병 원	제주대학교 병 원
'20.예산	39억	11.5억	3억	6억	3억	3.8억	1.5억	127억	6억	4.8억	10억	5억
인 력	28명	13명	6명	9명	5명	6명	5명	11명	6명	5명	8명	6명

나. 관계 법령 : 별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위탁운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신규설치(‘21.상반기)에 따라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2020.12.18.신설

I 관련규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운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20.12.18.신설

II 민간위탁 대상 사무현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위탁기관 :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시설위치 : 수탁기관 내
- 위탁금액 : ‘21년도 330백만원(국비 150백만원^{45%}, 도비 180백만원^{55%})
※ 매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역에 따라 사업비 편성(변동 가능)
- 위탁기간 : 3년간* * 협약서, 위탁기간 명시(‘21.4.1. ~ ‘24.3.31.예정)
※ 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제4항
- 운영인력 : 6명(단장1, 책임연구원 2, 연구원 2, 행정요원 1)
- 위탁 주요사무
 -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주요사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업무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및 실적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
8.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9. 충청북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에 근거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무로, ○ 최적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지원단 운영중인 12개 시·도중 11개소 위탁운영중이며, 직영인 1개소도 위탁 검토중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및 전 도민 의료서비스 보장 등 공공의료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공공성 확보 ○ 서비스 공급체계 또한,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공의료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급의 안정성 보장 ※ 직영일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③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의 정책역량 강화는 물론, 신속·정확한 업무수행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기존에 구축된 인력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효과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공공의료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 활용을 통해 공공의료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 및 질적 서비스 향상 도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이 용이하며, ○ 관련 자료는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 사업개선과 발전 도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근거, 지휘·감독 및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정지 조치 가능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보조금 관리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 위탁 가능한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3개소로, 도민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적정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IV 검토결과 ➔ **적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사업임.
-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정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증대

❖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V

향후계획

- '21. 1.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1. 2.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1. 2.~3.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협약체결
- '21. 4.~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제출·승인, 국고보조금 교부(보건복지부)
- '21. 6.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신규설치(’21.상반기)에 따라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 9. 29.)

I 관련규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운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II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위탁기관 :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시설위치 : 수탁기관 내
- 사업비 : '21년도 330백만원(국비 150백만원^{45%}, 도비 180백만원^{55%})
※ 매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역에 따라 사업비 편성(변동 가능)
- 위탁기간 : 3년간* * 협약서, 위탁기간 명시('21.4.1. ~ '24.3.31.예정)
※ 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제4항
- 운영인력 : 6명(단장1, 책임연구원 2, 연구원 2, 행정요원 1)
- 위탁 주요사무
 -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주요사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업무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및 실적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
8.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9. 충청북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추진체계 및 절차

①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20. 12월
②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 ('21. 1월 회기)	'21. 1월
③ 위탁공모	• 수탁기관 선정 - 방법 : 공개모집 - 자격 :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21. 2월
④ 심사·선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개최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기관역량 및 전문성, 사업계획 등 - 결정 : 최저·최고 제외, 고득점자 선정	'21. 2 ~ 3월
⑤ 협약체결	• 협약체결 및 공증	'21. 3월
⑥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제출·승인(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21. 4 ~ 5월
⑦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20. 6월

IV 세부 추진계획

① 도의회 동의

- 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제1항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 공고

- 공고방법 :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
- 응모자격 : 충청북도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개최시기 : 공개모집 신청접수 후
- 운영기간 : 수탁기관 선정 후 자동 해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1. 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
2. 구성 : 위원 6~9명 이내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
※ (당연직 3) 기획관리실장(위원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3.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기관역량 및 전문성 평가 : 사업수행능력, 지원단 운영계획
-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 평가 : 조사연구, 실적통계 모니터링 등 수탁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 종합평가 : 공공의료 인프라 연계와 조정 등 정책적 지원능력
※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④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수탁기관 선정 후('21. 3. 예정)
- 내 용 :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협약체결)

V 향후계획

- '21. 1.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1. 2.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1. 2.~3.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협약체결
- '21. 4.~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제출·승인, 국고보조금 교부(보건복지부)
- '21. 6.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0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붙임2

202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330,000	◦ (9개월분) 소요예산 기준 산출	
인건비	164,700 (4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겸직) : 월 1,000천원 × 9월 × 1명 9,000 ◦ 팀장(책임연구원) : 월 4,800천원 × 9월 × 2명 86,400 ◦ 주임연구원 : 월 3,300천원 × 9월 × 1명 29,700 ◦ 일반연구원 : 월 2,400천원 × 9월 × 1명 21,600 ◦ 행정요원 : 월 2,000천원 × 9월 × 1명 18,000 	
사업비	115,000 (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사업비 30,000 ◦ 통계구축사업비 15,000 ◦ 통합 교육체계·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0 ◦ 공공보건의료 교육사업 10,000 ◦ 자문수당, 회의비, 여비 10,000 ◦ 행사비(출범식 및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등) 20,000 ◦ 홍보비 10,000 	
운영비	50,300 (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조성(설립 첫회) - 사무기기 등 물품 구입 30,000 ◦ 업무추진비 10,000 ◦ 일반수용비 10,300 	

* 단장(전문외취득후 10년경과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경력 5년 이상인자, 또는 부교수 이상), 책임연구원(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박사급 이상), 주임연구원(석사급 이상), 일반연구원·행정(학사급 이상)